

사 업 연 도	~	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갑)	법 인 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구 분			금 액	
①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				
② 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				
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(①-②)				
일반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	④ $\frac{1,200\text{만원}}{(\text{중소기업 } 3,600\text{만원})} \times \frac{\text{해당 사업연도 월수}(\quad)}{12}$			
	총수입금액 기준	100억원 이하의 금액 $\times 30/10,000$		
		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$\times 20/10,000$		
		500억원 초과 금액 $\times 3/10,000$		
		⑤ 소계		
	일반수입금액 기준	100억원 이하의 금액 $\times 30/10,000$		
		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$\times 20/10,000$		
		500억원 초과 금액 $\times 3/10,000$		
		⑥ 소계		
	⑦ 수입금액 기준	$(⑤-⑥) \times 20(10)/100$		
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(④+⑥+⑦)				
문화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6조제3항)	⑨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			
	⑩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[⑨와 (⑧ $\times 20/100$)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]			
전통시장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6조제6항)	⑪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			
	⑫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[⑪과 (⑧ $\times 10/100$)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]			
⑬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합계(⑧+⑩+⑫)				
⑭ 한도초과액(③-⑬)				
⑮ 손금산입 한도 내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(③과 ⑬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)				

작성방법

1. ①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란: "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23호서식(을)]"의 ⑦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.
2. ② 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: "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23호서식(을)]"의 ⑩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.
 * 기준금액(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1조제1항)
 - 경조사비: 20만원
 - 경조사비 외의 기업업무추진비: 3만원
3.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(④~⑧)
 - 가.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,200만원, 중소기업은 3,600만원을 적용합니다.
 - 나. 총수입금액 기준의 금액란: "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23호서식(을)]"의 ③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 - 다. 일반수입금액 기준의 금액란: "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23호서식(을)]"의 ①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 - 라.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「법인세법」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(④+⑥+⑦)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 - 마. ⑦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10%를 적용합니다.
 - 바. 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시 법인이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4.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(⑨~⑩)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. ⑨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중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.
5.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한도(⑪~⑫)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6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. ⑪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중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6조제6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.
6. ⑭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 "0"으로 적습니다.

사 업 연 도	. . . ~ . . .	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 (을)	법 인 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1. 수입금액명세

구 분	①일반수입금액	②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	③합 계 (① + ②)
금 액			

2.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

④계 정 과 목						합 계
⑤계 정 금 액						
⑥기업업무추진비 계상액 중 사적사용경비						
⑦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(⑤-⑥)						
⑧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	경조사비 중 기준 금액 초과액	⑨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				
		⑩총초과금액				
	국외지역 지출액 (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1조제2항제1호)	⑪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				
		⑫총지출액				
	농어민 지출액 (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1조제2항제2호)	⑬송금명세서 미제출금액				
		⑭총지출액				
	기업업무추진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	⑮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				
		⑯총초과금액				
	⑰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(⑨+⑪+⑬+⑮)					
	⑱기업업무추진비 부인액 (⑥+⑰)					

작성 방법

1. ①일반수입금액란과 ②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란은 해당 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 다만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, 집합투자업자 등의 법인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2. ④계정과목란은 기업업무추진비로 사용된 비용, 건설 중인 자산 또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계정과목을 각각 적습니다.
3. ⑦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란은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 중 사적비용 성격의 기업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(「법인세법」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).
4. ⑧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⑦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중 신용카드(직불카드와 해외 발행 신용카드를 포함합니다), 현금영수증, 계산서·세금계산서 및 비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·발행하지 않은 금액을 경조사비, 국외지역 지출액, 농어민 지출액 및 기준금액 초과액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.
 - 가.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: ⑨에는 경조사비 중 1회 20만원 초과 지출금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, ⑩에는 총초과금액을 적습니다.
 - 나. 국외지역 지출액란: ⑪에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금액 중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서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, ⑫에는 총지출액을 적습니다.
 - 다. 농어민 지출액란: ⑬에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업무추진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「법인세법」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금액, ⑭에는 총지출액을 적습니다.
 - 라. 기업업무추진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: ⑮에는 ⑩, ⑫ 및 ⑭란의 지출금액을 제외한 3만원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, ⑯에는 총초과액을 적습니다.
 - 마. ⑰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란에는 ⑨, ⑪, ⑬ 및 ⑮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5. ⑱기업업무추진비 부인액란: 사적사용경비 성격의 기업업무추진비와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른 손금불산입 기업업무추진비 금액을 더하여(⑥란과 ⑰란의 합계) 적습니다.

[별지 제23호서식(병)] 삭제 <2002.3.30>